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- 「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조문을 변경하여 현행 규정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사용의 예약 관련 세부 규정 추가(안 제10조)

나. 시설사용료를 선납 후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공제기준을 재규정
(안 제11조제2항)

개정 전		개정 후	
취소 시기	환 불 액	취소 시기	환 불 액
· 사용예약일 3일전까지	· 전액	· 사용예약일 10일전까지	· 전액
· 사용예약일 2일전까지	· 사용료의 90%	· 사용예약일 5일전까지	· 사용료의 80%
· 사용예약일 1일전까지	· 사용료의 80%	· 사용예약일 3일전까지	· 사용료의 70%
· 사용 당일	· 사용료의 70%	· 사용 당일	· 사용료의 50%

다. 봉수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인상(안 「별표」 시설사용료)

구 분	평 형	요금 인상			비고
		성·비수기	전	후	
숲속의집	5인실 (29㎡ ~ 36㎡)	비수기	42,000	46,000	일괄 10% 인상 (안)
		성수기	70,000	77,000	
	6인실 (39㎡ ~ 46㎡)	비수기	49,000	54,000	
		성수기	82,000	90,000	
	8인실 (49㎡ ~ 56㎡)	비수기	56,000	62,000	
		성수기	94,000	100,000	
	16인실 (8인실*2)	비수기	112,000	123,000	
		성수기	188,000	207,000	
산림문화 휴 양 관	5인실 (29㎡ ~ 36㎡)	비수기	40,000	44,000	
		성수기	68,000	75,000	
	6인실 (39㎡ ~ 46㎡)	비수기	48,000	53,000	
		성수기	80,000	88,000	
	10인실 (59㎡ ~ 66㎡)	비수기	69,000	76,000	
		성수기	115,000	126,000	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【붙임 1】

-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5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 타

1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2) 입법예고 : 2017. 7. 10. ~ 7. 31.(22일간)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【붙임 2】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 / 【붙임 3】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봉수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6조의 별표 ‘시설사용료’ 를 일괄 10% 인상하고, 제10조 ‘시설사용료 납부 방법’ 과 제11조 ‘예약 취소시 환불 기준’ 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